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4

발의연월일: 2020. 8. 21.

발 의 자:이주환·김예지·김정재

서일준 • 윤창현 • 김용판

권명호・金炳旭・ 지성호

김기현 · 정동만 · 강민국

최승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 도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가목 중 "연구·조사 및 개발"을 "연구·조사·평가 및 홍보"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⑤
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1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	
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가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u>연구</u>	<u>연구·</u>
·조사 및 개발	조사·평가 및 홍보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3.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비용의 지원
<u>23.</u> (생 략)	<u>24.</u> (현행 제23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